

7. 학적 변동 관련(휴학, 복학, 자퇴, 제적 등)

가. 휴학

1) 휴학사유

- 가) 질병: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4주 이상의 수업을 출석할 수 없을 때
 - 나) 병역: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입대를 하는 경우
 - 다) 창업: 사업체를 창업하여 운영하거나 기 창업된 사업체를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다음에 해당하여야 한다.
- (1) 창업을 사유로 하는 휴학은 학생의 전공(복수전공, 연계전공 포함)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이어야 한다.
 다만, 관련 전공 분야의 창업이 아니더라도 창업휴학이 필요한 경우는 심사를 통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의 창업은 창업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다.

<창업휴학 허용 제외 대상 업종>

번호	대상 업종	분류 코드번호
1	금융 및 부동산	K64~66
2	부동산업	L68
3	숙박 및 음식점업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)	I55~56
4	무도장 운영업	91291
5	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	9112
6	기타 캠핑 및 배팅업	9124
7	기타 개인 서비스업(산업용 세탁업은 제외)	96
8	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통계청 발행 제9차 한국표준사업분류코드에 의함

- (2) 창업휴학의 자격은 본교에서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으로서, 휴학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을 완료 하고, 사업자등록증에 대표(공동대표)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.

라)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

- (1) 자기개발
- (2) 가계곤란
- (3) 임신 · 출산 · 육아
- (4)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
- (5) 장애학생
- (6) 그 밖에 학장이 휴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마) 군입대후 입영(소집) 취소(귀향조치) 시

병역휴학한 학생이 입영(소집) 취소 또는 연기 등으로 입대가 취소(귀향)되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귀향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, 병역휴학을 취소 신청하고 복학 또는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.

바)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총장이 특별휴학을 허가한 경우(학칙 제14조제4항)

- (1) 학칙 제14조제3항에 의한 휴학기간이 경과된 자가 질병으로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
- (2) 학칙 제14조제3항에 의한 휴학기간이 경과된 자가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
- (3) 9학기(건축학과는 11학기) 이상 등록자로 졸업 기준 충족에 필요한 이수대상 과목이 해당 학기에 설강되어 있지 않을 경우
- (4) 국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고시 및 자격시험에서 1차 이상의 시험에 합격하고, 연수를 받거나 2차 이상의

수험 준비를 할 경우

- 사) 질병으로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거나 다른 학생의 수학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총장이 휴학을 권고한 경우(학칙 제14조제2항)
- 2) 휴학기간(학칙 제14조제3항)
- 가) 휴학기간: 휴학 기간은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되 통산하여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
- (1) 신입학한 학생: 8개 학기
 - (2) 편입학 및 재입학한 학생: 4개 학기(단, 4학년 편입학 학생은 2개 학기)
- 나) 휴학기간의 산입 제외: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학은 휴학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.
- (1)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학기간
 - (2) 임신 · 출산 · 육아를 위한 휴학기간
 - (3) 창업휴학
 - (4)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총장이 권고한 휴학
- 나) 휴학사유별 휴학기간: 휴학사유별 휴학기간은 다음과 같다
- (1) 질병 휴학: 휴학 횟수별 1년 이내
 - (2) 병역 휴학: 군 복무기간(입영일이 속한 학기로부터 기본 2년, 복무기간 연장 시 해당 복무기간)
 - (3) 임신 · 출산 · 육아 휴학: 통산 2년 이내
 - (4) 창업휴학: 통산 2년 이내
 - (5)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휴학: 휴학 횟수별 최장 1년
 - (6)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총장이 권고한 휴학: 총장이 정한 기간
 - (7) 국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고시 및 자격시험에서 1차 이상의 시험에 합격하고, 연수를 받거나 2차 이상의 수험준비를 할 경우의 휴학: 해당 연수기간 또는 2차 이상의 수험 준비기간
 - (8) 9학기(건축학과는 11학기) 이상 등록자에게 해당 학기에 졸업기준에 필요한 이수대상 과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의 휴학: 1학기
- 3) 제출서류
- 가) 학생포털 웹서비스(inSTAR)에 휴학종류별 신청서를 입력 후 출력하여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
- 나) 질병, 병역의무의 이행, 창업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의 제출서류
- (1) 질병: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병 · 의원 진단서
 - (2) 자기개발 및 가계곤란: 지도교수 확인서(휴학 신청서 양식에 의함)
 - (3) 임신 · 출산 · 육아: 병원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
 - (4) 창업: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(법인사업자에 한함)
 - (5) 병역: 군입영통지서 (소집통지서)
 - (6) 군입대 전역 후 일반휴학: 전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및 일반휴학 증빙서류
 - (7) 군입대후 입영(소집) 취소(귀향조치)시: 귀향증명서
 - (8) 기타 휴학: 해당 사유로 인하여 수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지도교수 확인서(휴학신청서 양식에 의함)
- 다) 총장이 허가한 특별한 사유(학칙 제14조제4항)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의 제출서류
- (1) 학칙 제14조제3항에 의한 휴학기간이 경과된 자가 질병으로 5주 이상 치료를 필요하는 경우: 병 · 의원 진단서
 - (2) 학칙 제14조제3항에 의한 휴학기간이 경과된 자가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을 수강할

수 없는 경우: 해당 사고처리기관의 확인서 또는 지도교수 확인서(휴학 신청서 양식에 의함)

- (3) 9학기(건축학과는 11학기) 이상 등록자로 졸업기준 충족에 필요한 이수대상 과목이 해당 학기에 설강되어 있지 않을 경우: 지도교수 확인서(휴학 신청서 양식에 의함)
- (4) 국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고시 및 자격시험에서 1차 이상의 시험에 합격하고, 연수를 받거나 2차 이상의 수험 준비를 할 경우: 해당 합격을 증빙하는 서류

4) 휴학의 허가: 총장의 승인으로 허가한다.

5) 일반휴학자의 군입대 휴학 전환: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가 군입대휴학을 하는 경우 입대 전에 군입대 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. (군입대 7일 전부터 학생포털 웹서비스(inSTAR)에서 신청 가능)

6) 휴학의 취소: 휴학허가를 총장으로부터 받은 자가 휴학사유 소멸로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7) 입학 첫 학기 휴학의 제한: 신입학, 재입학, 편입학한 학생은 다음 각호의 사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한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.

- (1) 질병
(2) 병역의무의 이행
(3) 임신 · 출산 · 육아

8) 휴학자의 성적인정

휴학자의 당해 학기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병역휴학자, 학칙시행세칙 제7조제4항제4호에 의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시 및 각종 자격시험에서 1차 이상 합격하고 2차 준비를 위한 특별휴학자, 신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자로서 이수중인 교과목 별로 당해 학기 총 수업일수의 2/3이상을 출석한 자는 기말고사에 대하여 조기시험을 신청하고, 이에 응시하여 성적을 취득할 수 있다. 이 경우 휴학기간은 다음 학기부터 개시한다.

9) 휴학기간 경과 후 수업일수 1/3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는 자, 매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자가 제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한 경우 학과장의 신청으로 휴학 처리할 수 있다.

10) 휴학 연장 제도 시행

가) 시행목적: 학생 개인의 실수나 누락으로 인한 휴·복학 미신청 및 미등록으로 제적처리 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여 학생의 학업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함.

나) 시행개요: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실수 및 누락으로 휴·복학 신청 기간 내 휴·복학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, 잔여 휴학 기간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학과장의 신청으로 일반휴학 연장 처리

다) 시행방법: 2018-1학기부터 일반휴학을 신청한 학생이 휴학 연장제도에 대해 동의한 경우 적용

라) 대상자(학칙 제18조제2항)

(1) 휴학기간 경과 후 수업일수 1/3이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않는 자

(2) 소정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

나. 복학

1) 복학의 시기

- 가) 복학은 휴학 만료 학기 수업종료일로부터 복학 학기 개시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수업일수 1/3 이내까지 하여야 한다.
 - 나) 병역의무를 이행중인자가 매 학기 수업일수 1/3 이후에 전역할 경우라도 실제로 수업일수 2/3 이상 수강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.
- 2) 복학 신청 절차: 학생포털웹서비스(inSTAR) → 학사관리 → 복학신청 → 복학신청 메뉴 클릭(군 복학자의 경우 전역증 또는 전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첨부)

다. 자퇴

자퇴하고자 하는자는 학생포털웹서비스(inSTAR)에서 자퇴신청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CA 및 지도교수의 상담을 거쳐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라. 제적

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할 수 있다.

- 1) 휴학기간이 지난 후 수업일수 3분의 1이 넘도록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
- 2)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
- 3) 사망,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
- 4) 징계처분으로 제적이 확정된 경우
- 5) 「학생평가규정」에 따른 학사경고 제적 대상인 경우
- 2)호에도 불구하고 1)와 2)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제적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칙 제14조제3항의 범위에서 학과장의 신청으로 휴학 처리할 수 있다.

마. 학적부 변경

- 1) 학칙시행세칙 제31조(학적부 정정)에 의거하여 학적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증명 서류가 첨부된 학적부 정정신청서를 학사지원실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※ 복학시기, 제적안내, 성적표 발송 등 학적관련 중요사항을 안내받기 위해서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수정을 해야 함

2) 변경 방법

- 가) 본인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: 학생포털웹서비스(inSTAR)→ “개인정보 수정”에서 수정 가능
- 나) 본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생년월일, 보호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학적부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생서비스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, 팩스, E-mail로 신청하여 변경 가능함
※ 담당자 연락처: 063-220-2135, Fax: 063-220-2646
- 다) 학적부 정정 처리는 2-3일 이내에 가능하며 처리된 후 문자메시지로 통보함